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

리 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률학부문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가건설리론과 법리론을 더욱 완성 하며 경제와 관련한 법들을 비롯한 법해설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에 법질서와 준법기품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은 민사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는것은 민사법률행위 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문제는 의사표시를 어떤 형식으로 하며 민사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기에도 일정하게 연구되였고 그 과정에 일련의 성과도 이룩되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 학계에서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와 효력발생을 위한 형식적조건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취급해왔다. 그러다나니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을 취급하면서 민사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인 공증형식을 의사표시의 형식인 구두형식이나 서면형식과 함께 취급하게 되였고 결과 공증형식도 마치 의사표시의 형식처럼 리해할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어떤 형식적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혼탁시킬수 없는 서로 다른 성 격의 문제이다.

실례로 구두나 서면은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이고 공증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형식으로 수행된 의사표시가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조건인것이다. 공증 그자체는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어떤 형식적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구분하여 민사법률행위의 형식 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명하여야 한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는 무엇보다먼저 민사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원하는 자기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의사와 표시로 구성된다.

의사는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바라는 당사자의 의도, 속생각이다. 이러한 의사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데서 기초 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의사만 가지고서는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한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여 객관이 인식할수 있어야 바라는 효과를 일으킬수 있는것이다. 당사자가 자기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것이 바로 표시이다.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는 의사표시는 민사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민사법률행위는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당사자의 의식적인 행위이다. 민사법률행위가 해당한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자면 행위자의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여 그 의사를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민사법률행위에서 가장 관건적인 요소는 행위자가 자기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가 없이는 민사법률행위가 성립될수 없다.

이러한 리유로 하여 도이췰란드민법리론에서는 한때 민사법률행위는 곧 의사표시라 고까지 정의하였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민사법률행위의 관건적인 요소라고 하여 민사법률행위가 곧 의사 표시인것은 아니다.

의사표시는 민사법률행위성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일뿐이다. 일련의 민사법률행위들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와 기타 법률사실이 결합되여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례하면 전당권은 전당계약의 체결만 가지고서는 성립되지 못하며 전당물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의 수중에 이전시키는 행위까지 있어야 성립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해당 민사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다. 전당계약의 체결이 없이 전당물의 점유만 이전시켜서는 전당권이 성립될수 없다.

민사법률행위의 가장 관건적인 요소인 의사표시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할수 있다. 즉 구두나 서면으로 할수 있으며 몸짓으로도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은 의사표시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실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아래부터는 공화국민법이라고 함) 제24조 전단에서는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이나 서면같은것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은 공화국민법이 의사표시의 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의사표시는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것은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파악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사표시하는자의 의사를 알수 있는 형식이면 의사표시의 형식으로 인정된다.

민법은 례외적으로 일련의 민사법률행위들에 대하여 그 중요성으로 보아 특정한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할것을 요구할뿐이다.

실례로 공화국민법 제24조 후단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 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는 다음으로 민사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어떤 형식적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사법률관계에서 의사표시를 한자가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 진자이고 그 내용이 적법적이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자원성에 기초한것이면 법적효 력을 가진다. 즉 의사표시한자가 기대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일련의 민사법률행위들은 그외에도 일정한 형식적조건을 구비해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실례로 부동산거래행위를 들수 있다.

공화국민법 제94조에는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거래행위는 의사표시 를 서면으로 할뿐아니라 공증이라는 형식적인 요구까지 만족시켜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민법이 일련의 민사법률행위들에 대하여 공증과 같은 특별한 형식적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들이 보통 법이 보호하는 중대한 리익과 관련된것들이기때문이다.

실례로 부동산거래행위에서 부동산은 보통 그 가치가 크며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보호의 의의도 크다. 만일 이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형식적요구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진정한 권리자의 리익을 보호하지 못할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쌍방당사자만 모여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후날 계약일방이 계약체결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면 그 상대방은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것으로 하여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수 없게 되고 자기의 계약상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고 당사자들의 계약상리익을 보호하자면 계약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두는것이 효과적이다.

이로부터 민법에서는 우와 같은 중요계약들에 대하여 공증과 같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조건으로 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민사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조건은 의사 표시의 형식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처럼 의사표시와 효력발생을 위한 형식적조건은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법률적문제로 된다.

우리는 민사법률관계의 형식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 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민사법률행위, 의사표시